



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

[시행 2004. 8. 17.] [노동부고시 제2004-30호, 2004. 8. 11., 제정]

고용노동부(외국인력담당관실), 044-202-7150

1. 상해보험 보험금액

구분	상 해		질 병	
	사망	장해	사망	장해
보험금액	3천만원	최대 3천만원	1천5백만원	1천5백만원

2.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3.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.

부칙 <제2004-30호,2004.8.11.>

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